

# 평창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51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2. .  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- 가. 「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식품안전 기본법」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제조·가공시설의 시설기준을 완화함으로써,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확대에 기여하고,
- 나. 농업인 등이 식품 제조·가공을 하는 경우 특정 시기(수확기, 농한기 등)에 작업이 집중되며 소규모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표준조례를 마련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평창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적용 대상 농업인(안 제2조)
- 농업인 등이 평창군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
  -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
  -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1억원 미만인 경우

나. 평창군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지원센터 설치·운영(안 제6조)

- 군수는 식품가공산업의 창업과 그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평창군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-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센터 업무
  1. 각종 정보, 교육·훈련 및 연수,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
  2.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
  3.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·세무·회계·디자인·홍보 및 판매 활동 등 지원
  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다.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시설기준 및 점검(안 제8조)

- 농업인 등이 식품가공산업을 하고자 할 경우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준(별표1)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“붙임”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“붙임”

다. 관계부서승인 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(‘14. 9. 30. ~ ’14. 10. 22.) 결과반영

## 평창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을 지원·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,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농업인 등"이란 평창군(이하"군"이라 한다)에 주소를 가진 「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.
2. "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(이하"식품가공산업"이라 한다)"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산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.
  - 가. 농업인 등이 평창군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
  - 나.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(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)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
  - 다. 식품가공산업의 연매출이 1억 원 미만인 경우
3. "사업자"란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·채취·제조·가공·조리·유통 또는 판매(이하"생산·판매 등"이라 한다)를 식품가공산업으로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평창군수(이하"군수"라 한다)는 소규모 식품가공 산업의 창업과 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·인력·정보·기술·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 지원을 하고, 해당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가공산업의 시설(이하"시설"이라 한다) 기준 설정과, 그 가공식품(이하"식품"이라 한다)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·감독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업자의 의무)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·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,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·감독 및 교육·훈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

③ 사업자는 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고 식품의 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하며,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.

④ 식품가공산업을 영위하려는 농업인 등의 사업자는 제8조에서 군수가 정한 시설기준 외에는 영업의 등록을 위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군수는 식품가공산업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식품가공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2. 식품가공산업에 대한 자금·정보·기술·인력·판로 등의 지원방안
3.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, 품질관리 및 조사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해마다 그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군수는 식품가공산업의 창업과 그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"평창군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지원센터(이하"지원센터"라 한다)"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지원센터는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각종 정보, 교육·훈련 및 연수,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
2.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
3. 식품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·세무·회계·디자인·홍보 및 판매활동 등 지원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관련 단체 등에 위탁운영

할 수 있다.

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는 그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사업자의 지원) 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군 또는 그 직속기관·사업소 및 읍·면에서 식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제8조(시설기준 및 점검) ① 농업인 등이 식품가공산업을 하고자 할 경우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준[별표 1]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② 군수는 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기준의 적합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.

③ 사업자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의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·비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점검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.

제9조(자주적인 위생관리 등) ① 군수는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식품의 생산·판매 등 각 과정에서 사업자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지도·감독을 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자는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식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

사업자명 및 가공일자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해당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.

제10조(정보제공 등 촉진) ① 군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전 공정에 대한 정보를 기록·보관 및 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심의위원회 설치) ① 군수는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"평창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"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"평창군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(농업정책분과)"가 대신한다.

제12조(기능) 위원회는 식품가공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식품가공산업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3. 식품품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식품가공산업에 필요한 사항 등

제13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,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, 참석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거나, 심의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14조(준용) 사업자의 지원,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, 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 등에 따른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[별표 1]

##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체 시설기준 설정

### ○ 소규모 식품가공업체 시설의 공통사항

가.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  
(이하“건물”이라 한다)

- 1)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·화학물질,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.
- 2)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.

### 나. 작업장

- 1)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·화학물질,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 제조·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. 다만,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(농산물 등)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,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.
- 2) 작업장은 원료처리실·제조가공실·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·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, 제조 공정의 특성에 따라 분리, 구획(칸막이·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, 구분(선·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와 같다) 하도록 한다.
- 3) 작업장의 바닥·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.
  - 가)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하여,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.
  - 나)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.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.
  - 다)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, 벽, 바닥, 천장, 출입문, 창문 등은 내구성,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, 세척·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.
  - 라) 가), 나), 다)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.

- 4)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·유해가스·매연·증기 등을 환기 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자연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.
- 5)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, 설치류,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6) 발생하는 하수는 하수관(처리시설)으로만 유입되어야 한다.

#### 다. 식품취급시설 등

- 1) 식품을 제조·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·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·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.
- 2) 냉동·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

#### 라. 급수시설

- 1) 수돗물이나 「먹는물관리법」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- 2) 1)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.

#### 마. 화장실

- 1)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#### 바. 창고 등의 시설

- 1)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·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.

## ○ 소규모 식품업체 시설의 개별기준

-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여 등록된 품목에 대하여 제조공정에서 필요한 설비의 구비에 따라 적용함

### 〈사례 : 장류제조업의 경우〉

#### - 메주제조

- ▶ 제조공정 : 원료-선별-세척-침지-삶기-분쇄-성형-건조-발효-숙성
- ▶ 필요한 시설
  - 작업장 : 세척 및 삶기, 성형이 가능한 기구·설비 및 상하수도 연결
  - 발효실 : 건조 및 발효의 조건 유지(건조기로 대체 가능)

#### - 제품제조

- ▶ 된장 제조공정 : 메주-세척-담기-간장분리-숙성-포장
- ▶ 고추장 제조공정 : 원료-분쇄-당화-교반-숙성-포장
- ▶ 필요한 시설
  - 작업장 : 세척 및 삶기, 성형이 가능한 기구·설비 및 상하수도 연결
  - 포장실 : 제품 포장 시 이물혼입을 차단할 수 있는 공간
  - 분쇄실 : 분진이 작업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
  - 기계류 : 재료섞기 작업이 가능한 용기 등

#### - 사과즙제조업의 경우

- ▶ 제조공정 : 원료-선별-세척-분쇄-가열-착즙-포장
- ▶ 필요한 시설
  - 작업장 : 세척이 가능한 상하수도 시설
  - 분쇄 및 포장실 : 이물혼입을 차단할 수 있는 공간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## 1. 비용발생 요인

: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 (제3조제5항 중 제1호)

: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## 3. 미첨부 사유

: 평창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비용추계사항 없음

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이 상 필
연락처	(033) 330 - 1302

# 관계법령 발췌

## □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외소득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농업인등"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가.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

나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

## □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농어업"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.

가. 농업: 농작물재배업, 축산업,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2. "농어업인"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.

가. 농업인: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

## 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9.5.27.>

2. "농업법인"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.

3. "농업경영체"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.

## □ 식품위생법

제37조(영업허가 등)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3.3.23.>

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,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6.7., 2013.3.23.>

## 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

제36조(업종별시설기준)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.

### 1. 식품제조·가공업의 시설기준

#### 자.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

- 4) 「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,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「수산물품질관리법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·가공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 □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### 제15조 (정책심의회)

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·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, 해양수산부에 중앙 어업·어촌정책심의회를 두고, 시·도에 시·도 농업·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시·도 어업·어촌정책심의회를 두며, 시·군 및 자치구에 시·군·구 농업·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시·군·구 어업·어촌정책심의회를 둔다. [개정 2013.3.23]

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·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어업·어촌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, 시·도계획 및 시·군·구계획, 그 밖에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[개정 2013.3.23]

1.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제17조에 따른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
3. 수산 분야 등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

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·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어업·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개정 2013.3.23]

[본조제목개정 2013.3.23]

## □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

**제15조** (시·군·구 농업·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·군·구 어업·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 등)

① **법 제15조**에 따른 시·군·구 농업·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·군·구 어업·어촌정책심의회(이하 “시·군·구 정책심의회”라 한다)는 각각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[개정 2013.3.23]

② 위원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·부군수 또

는 부구청장(광역시 자치구의 부구청장을 말한다)이 되며, 다른 1명은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위촉한다.

1.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

2. 생산자단체, 농어업인단체,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

3.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·연구소·국제기구에서 조교수·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·행정기관·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6명 이내

4. 지역농어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어업인·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

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⑤ 시·군·구 정책심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·군·구 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 [개정 2013.3.23]

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·군·구 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 [개정 2013.3.23]

[본조제목개정 2013.3.23]